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09 호

2003 년 4 월 11 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56호 (공사(건축)입찰공고<구월배수펌프>----- 3
장밋간석역일원하수박스준설공사)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58호 (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공청회개최계획공람공고)--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5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9호)----- 6
선)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열람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1호 ((긴급)전자입찰공고<만수3>----- 12
택지일원하수도준설공사)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 13
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3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 33
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4호 (미술장식품신의결과공고)----- 3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5호 (신조및폐기공인공고)-----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6호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해제)----- 39
관련주민설명회개최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7호 ((긴급)공사입찰공고<상인천초등학교쉼터조성공사>)-- 4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8호 ((긴급)공사입찰공고<간석초등학교쉼터조성공사>)-- 4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9호 ((긴급)공사입찰공고<만수6동>----- 42
외1개소담장허물기조성공사)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70호 ((긴급)공사입찰공고<만수6동>----- 43
외1개소담장허물기조성공사)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72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 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4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73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 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4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74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3호 선)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공람)----- 49
- 대한주택공사논현사업단공고 제2003-1호(공시송달공고[인천논현(2)택지개발지구]) - 5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56호

공사(건축)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구월배수펌프장 및 간석역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설계금액 : 59,433,000원 [기초금액과 동일]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3년 4월 8일(화)오전09:00 ~ 2003년 4월 12일(토)오후17:00
- 입찰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14일(월) 10:00 입찰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 : 2003년 4월 8일(화) ~ 2003년 4월 12일(토) [남동구청 건설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업체이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 기초금액(59,433,000원)의 ±3%범위내 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외

6. 낙찰자 통보 : 입찰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한 것으로 간주

7.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동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8. 문의할 곳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담당자 : 조세훈)

2003. 4. 7.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58호

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공청회개최계획공람공고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4.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가 목 적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나. 개최 일시 및 장소

(1) 개최예정일 : 2003. 4. 30. (수) 15:00

(2) 개최 장소 : 인천상공회의소

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동측 : 논현(2)택지개발사업 지구 경계
- 서측 : (주)한화소유토지 경계
- 남측 : 광로3-5호선(해안도로) 포함
- 북측 : 논현(2)택지개발사업 지구 경계

(2) 개발계획의 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
- 면 적 : 2,486,296㎡ (752,105평)
- 제 안 자 : (주)한화
- 개발방식 : 도시개발사업(사용 및 수용방식)
- 개발전략
 - 쾌적한 주거환경의 창출
 - 역세권의 효율적 개발
 - 미래지향적 해양문화공간 조성
 - 다양하고 풍부한 공원·녹지의 제공

- 개발방안

- 기존 지형·식생의 보존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 주거, 문화, 휴식공간의 조화
 - 역세권 및 수변 조망권을 갖춘 주거단지 조성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지역주민 여가 활동을 위한 문화·교육공간 제공
 - 레저·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라.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에 대한 의견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나.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한 의견 :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서면 제출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기 타 : 의견서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692)로 제출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5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1-9호선)“고잔동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666) 및 건설과(☎ 453-25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4.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5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로(소1-9호선)

(2) 명 칭 : 고잔동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1-9호선 : 폭원(B)=10m, 연장L=1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3. 4. ~ 200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9.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10.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토 지 조 서

<고잔동 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 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	지번				성 명	구 분	성 명	주 소	
1	고잔	586-2	도	9,362	47	국	관리청건설부		-	-
2	"	341-10	잡	13	13	백남일	인천남동구고잔동302		-	-
3	"	357-10	전	23	23	진미화	인천남동구고잔동488-9신라빌라9동103호	관리자 근저당 채권자	인천남동구청 인천산림조합 이 광 재	인천남동구만수동1011 인천남구도화동744-13
4	"	357-9	전	83	83	김복성 박명신	인천남동구고잔동356 인천남동구고잔동357		-	-
5	"	355-1	전	110	110	오장식	인천남구학익동239-11	근저당	국민은행 9-1(강화지점)	-
6	"	344-8	전	79	79	오원재	인천남동구고잔동366-1	근저당	인천남동구만수동 1014-1번지	-
7	"	350-24	답	518	518	허성태	인천남동구고잔동 358-4번지	근저당	인천시남구옥련동34 4-1(학익지소)	-

토 지 조 서

<고잔동 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 호	소 제 지		지목	지적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구분	성명	주 소	
8	고잔	358-5	대	3	최진호	인천시남동구고잔동 186-1번지		근저당	한빛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111-1(주안서지점)	-
9	"	358-6	전	171	백윤기	부천시원미구중동1176-2 무지개마을1201-1104					-
10	"	357-7	대	108	이성구	인천남동구간석동169-13 1층1호					-
11	"	357-8	전	53	김천수	서울관악구봉천동 1521-33번지					-
12	"	359-12	전	41	오승희	인천남구주안동180-12					-
13	"	351-4	도	15	한인순	인천연수구동춘동925-7 삼환아파트113동1403		근저당	중소기업 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 50번지(연수지점)	-

지 장 물 목 록 조 서

<고잔동 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건물구조	총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용도
	동명	지번					주소	성명		
1	고잔	358-5	브릭기와(식당)	148.88	12.57	136.31	인천남동구고잔동186-1번지	최진호		식당
			브릭스래트(식당)	20.25	-	20.25		442-9923		식당
			브릭함철(식당)	20.10	-	10.80				식당
			계	179.93	12.57	167.36				
			브릭스래트(화장실)	2.72	0.66	2.66				화장실
			브릭담장	H=1.5M		L=28.0M				
			목조대문		1식					
2	고잔	341-10	브릭함철(방앗간)	61.05	32.10	28.95	인천남동구고잔동302	백남일		방앗간
			브릭담장	H=0.6M	L=10.8M			446-6233		
3	고잔	357-7	브릭기와(주택)	64.80	48.06	16.74	인천남동구간석동169-13	이성구		주택
			브릭스래트(주택)	4.68	4.68	-	1층1호			주택
			브릭스라브(주택)	10.85	0.44	10.41				주택
			계	80.33	53.18	27.15				
			콘크리트(계단)	B=0.9M	L=1.9M					계단
			조립식담장	H=1.7M	L=11.0M					
			갓목조대문	1식						

지 장 물 목 조 서

<고잔동 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 재 지		건 물 구 조	총 면 적 (㎡)	면적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용도
	소	지번					주	소	성 명	
4	고잔	357-5	벽기기와(주택)	75.05	7.05	68.00	인천남동구고잔동488-9		전미화	주택
			벽스라브(화장실)	7.40	-	7.40	신라빌라9동103호		011-9716	화장실
			콘크리트(계단)	B=0.7M	L=1.6M				-7788	계단
5	고잔	357-8	벽스래트(주택)	60.40	27.20	33.20	서울관악구봉천동1521-33		김천수	주택
			목조스래트(욕실)	4.02	4.02	-				욕실
			목조스래트(보일러실)	2.48	2.48	-				보일러실
			조립식담스래트(창고)	8.60	-	8.60				창고
			조립식담장	H=1.8M	L=12.0M	8.60				
			벽담장	H=1.8M	L=6.0M					
			목조대문	1식						
6	고잔	357-9	벽스래트(주택)	35.28	6.30	28.98	인천남동구고잔동356번지		김복성	주택
			벽스래트(화장실)	4.72	4.72	-				화장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1호

공개(견적)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만수3택지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설계금액(기초금액) : 35,970,000원(부가세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3년4월15일(화)오전09:00 ~ 4월24일(목)오후17:00
- 입찰진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25일(금) 오전 10:3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에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 : 2003년 4월10일(목)~2003년 4월 14일(월) [남동구청 건설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을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이며
-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중 준설차량을 소유한 업체.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을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기초금액(35,970,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제외

6. 낙찰자 통보 : 입찰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한 것으로 간주

7. 기타 유의사항

- 본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있으며,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 응해야 하며,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453-254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8. 문의할곳 : 남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453-2542 담당자 : 박충길)

2003. 4. 9.

인천광역시하수도특별회계남동구기업출납원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4.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
-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 과다한 청사신축으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의 부담 및 부정적 영향 해소

3. 주요 개정내용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인하(안 제22조제1항)
-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인하 (안 제22조제2항 및 3항)
- 대부료등에 대해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부가하던 것을 영 제100조제6항 각 호의 요율에 의해 부가 : 연체기간에 따라 연12퍼센트에서 연15퍼센트로 연체료를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28조제1항)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 산정에 관한 용역 실시 결과 산출된 표준면적 기준을 추가(안 제47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3년 5월 10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참조(자치행정과장), 전화번호(453-2230), FAX(453-2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주소, 성명(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
-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 과다한 청사신축으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의 부담 및 부정적영향 해소

□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인하(안 제22조제1항)
-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인하 (안 제22조제2항 및 3항)
- 대부료등에 대해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부가하던 것을 영제100조제6항각호의 요율에 의해 부가 : 연체기간에 따라 연12퍼센트에서 연15퍼센트로 연체료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 산정에 관한 용역 실시 결과 산출된 표준면적 기준을 추가(안 제47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영 제84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한다.

제11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여야 한다.”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2조 제1항중 “잔액에 연 5퍼센트”를 “잔액에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3항중 “잔액에 연 8퍼센트”를 “잔액에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23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25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8조의2 제5항제1호중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을 “기타 이외의 지역에서”으로 한다.

제38조의4 제4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 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④ (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첨부”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공유재산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생략) ②재산관리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u>영 제84조의2</u> 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지방재정법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u>제84조의2</u> 의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지방재정법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u>제84조의2</u> 의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지방재정법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u>제84조의2</u> 의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지방재정법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u>제84조의2</u> 의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법명 지정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생략) ④ <u>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현행과 같음) ④ <삭제>	○'02.7.15 조례 개정시 제1항에 보존재산이 추가되어 내용이 중복됨.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u>조건으로 붙여야 한다.</u> 1.~8. (생략) <신설>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현행과 같음) 9. <u>허가조건</u>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현행과 같음) 9. <u>허가조건</u>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현행과 같음) 9. <u>허가조건</u>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현행과 같음) 9. <u>허가조건</u>	○조문 내용 따라 명칭변경 및 허가조건 명시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5퍼센트</u>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6. (생략)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8퍼센트</u>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 - - - - - - - - - - - - <u>잔액에 4</u> <u>퍼센트의</u> - - - - - - - - - - 1.~6.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u>잔액에 연 6퍼센트의</u>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 - - - - - - - - - - - - <u>잔액에 4</u> <u>퍼센트의</u> - - - - - - - - - - 1.~6.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u>잔액에 연 6퍼센트의</u>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 - - - - - - - - - - - - <u>잔액에 4</u> <u>퍼센트의</u> - - - - - - - - - - 1.~6.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u>잔액에 연 6퍼센트의</u>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 - - - - - - - - - - - - <u>잔액에 4</u> <u>퍼센트의</u> - - - - - - - - - - 1.~6.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u>잔액에 연 6퍼센트의</u>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이자를 인하	

현행	기정안	사유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략)	③ - - - - - 잔액에 연 6퍼센트의 - - - - - 1.~5.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제23조제3항의 규정에 - - - - -	○'02.7.15 조례 개정시 제3호를 삭제하여 인용 법령 변경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①~③(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 - 세입세출의 현금 - - - - - ⑤(현행과 같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 - - - 교환차액을 - - - - - - - - - - 연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 - - - -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수 없다. 이 경우 -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

[illegible]

현행	개정안	사유
2.~5.(생략) ⑤·⑥ (생략) 제47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등의 설계)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중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 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별표】 “별첨”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면적기준 산정에 관한 용역실시결과 표준면적기준 산출
【별표】 <신설>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충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충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다.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구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층 면적의 27%~33%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라. 공용면적(로비, 복도, 계단)

[(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

2. 구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절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구 :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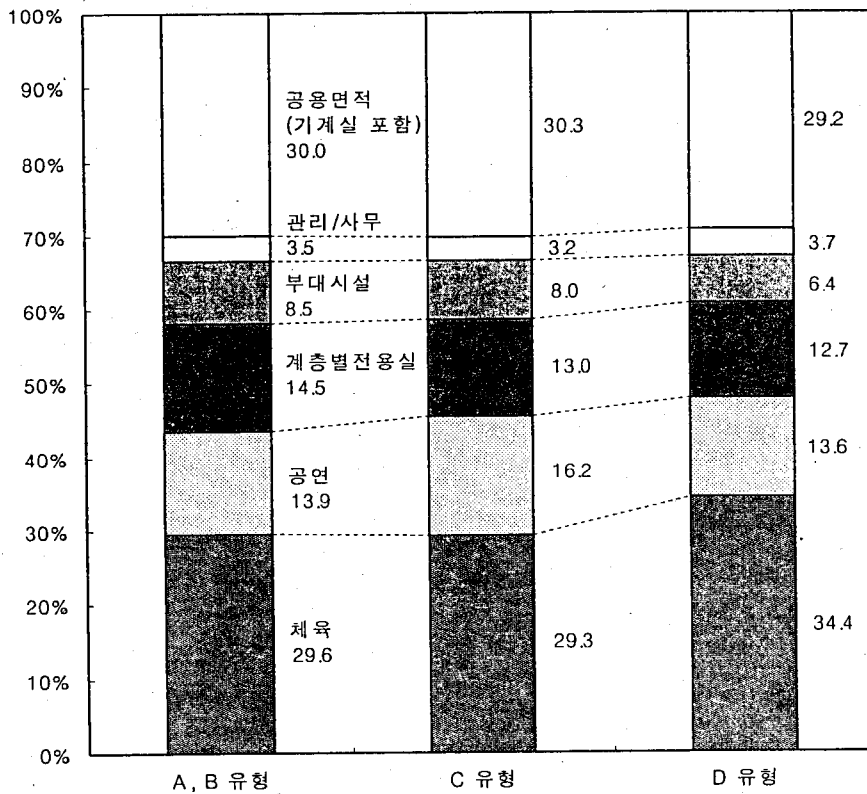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구	수용시설설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pm 5\sim 10\%$ 를 별도로 고려한다. ·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축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㉔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㉕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㉖	205	172	148	28
합계	계 ㉗-㉚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강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강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조계육실)	120	100	50	-
	소계 ㉛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㉜	720	600	480	210
합계	계 ㉝+㉞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진료 활동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무 부분	d	소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지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²)

구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장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에미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3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4.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3. 주요 개정내용

○ 각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자로 동장을 지정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3년 5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참조(자치행정과장), 전화번호(453-2230), FAX(453-2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주소, 성명(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 주요골자

- 각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자로 동장을 지정(안 제2조 제2항의제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중 “청·소에서”를 “청·소·동에서”로, “청·소의 장”을 “청·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 문 대 비 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 관리관 지정) ①(생략) ②(생략) 1.(생략) 2. <u>첨·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u>첨·소의 장</u> 3~5(생략)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 관리관 지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u>첨·소·동에서</u> - - - - - - - - - - <u>첨·소·동의 장</u> 3~5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4호

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택지개발 1,2B/L 도림아파트 건축물 신축에 따른 미술장식품 심의결과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심의일시 : 2003. 4. 3(목) 14:00
2. 심의장소 : 남동구청 4층 소회의실
3. 심의결과

【 도림아파트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택지개발 1,2B/L		
건 축 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장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분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1	시간의 우화	조각	승인	○ 중앙 스테인레스스틸(SUS304) 파이프의 두께 : 40mm 이상으로 조정 ○ 조형물 모사리 부분 : 라운딩 처리 ○ 조형물 바닥 : 버니팅으로 거친다듬 마감처리(상주석) ○ 연결부분 : 양키볼트 작업 후 에폭시 처리
2	도림별곡	조각	승인	○ 봉우리를 표현하는 바닥의 반구 조형물 : 상주석 또는 문경석(붉은색 계통)으로 변경 ○ 조형물 주변 바닥재료 : 화강석 또는 사괴석(밝은 흰색)이나 화석이 섞인 계통으로 작업처리 ○ 분수조형물에 콘크리트 설치(동절기 댕수 후 관리) ○ 주변 복지관 건물에서 최대한 간격을 두어 작품을 설치

2003. 4.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5호

신조및폐기공인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신조 및 폐기사유 : 국고금관리법 시행
2. 신조공인 최초사용년월일 : 2003. 4. 10.
3. 신조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신 조 공 인 명	환경개선특별회계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징수관인	폐 기 공 인 명	환경개선특별회계인천광역시남동구세입징수관인
공인의 인영		공인의 인영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6호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해제관련주민설명회개최공고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관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해제하는 사항으로 우선해제집단취락 선정 및 경계선 결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4.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①. 시 기 : 2003.4.28 ~2003.4.30(3일간)

②. 세부일정

- 4. 28 : 계양구
- 4. 29 : 서구, 부평구
- 4. 30 : 연수구, 남동구

③. 주 관 : 인천발전연구원, 시 주택건축과

④. 안 전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집단취락 선정 및 경계선설정(안)

2. 주민설명회 세부 일정

①. 개회사 : 도시계획국장 또는 주택건축과장

②. 발 표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왕기 박사

③. 도면열람 및 의견서 작성 : 취락별 토지소유자 및 거주민

④. 의견서 회수

3.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 남동구청 2층 대회의실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453-2684)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7호

(긴급)공사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상인천초등학교 컴퓨터조성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 일
- 설계금액 : 142,153,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3년 4월 11일(금) 09:00 ~ 2003년 4월 16일(수) 18: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17일(목) 10: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년4월11일(금)~2003년4월16일(수) [도시정비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로서,

- 건설기술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종 중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이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실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99호,2002.10.2)에 의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003. 4. 25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42,153,000원)의 ±3%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대상).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9. 문의할 곳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담당자 : 조세훈)

2003. 4. 10.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8호

(긴급)공사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간석초등학교 컴퓨터조성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 일
- 설계금액 : 94,864,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3년 4월 11일(금) 09:00 ~ 2003년 4월 16일(수) 18:00
- 입찰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17일(목) 10:30 입찰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11일(금)~2003년 4월 16일(수) [도시정비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로서,
- 건설기술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 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실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99호,2002.10.2)에 의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003. 4. 25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94,864,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대상).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 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 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9. 문의할 곳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담당자 : 조세훈)

2003. 4. 10.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69호

(긴급)공사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만수6동외 1개소 담장허물기 조성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 일
- 설계금액 : 72,347,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3년 4월 11일(금) 09:00 ~ 2003년 4월 16일(수) 18: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17일(목)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년4월11일(금)~2003년4월16일(수) [도시정비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로서,
- 건설기술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이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실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99호,2002.10.2)에 의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003. 4. 25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72,347,000원)의 ±3%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대상).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하므로 G2B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9. 문의할 곳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담당자 : 조세훈)

2003. 4. 10.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70호

(긴급)공사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문화남로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 일
- 설계금액 : 94,138,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3년 4월 11일(금) 09:00 ~ 2003년 4월 16일(수) 18: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17일(목) 9:3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11일(금)~2003년 4월 16일(수) [도시정비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로서,
- 건설기술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식재공사업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연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같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실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99호, 2002.10.2)에 의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003. 4. 25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94,138,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대상).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 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9. 문의할 곳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담당자 : 조세훈)

2003. 4. 10.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72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한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4.11 ~ 2003. 5.10(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5. 10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4.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산71	논현중앙교회	브릭스레트	63.64	성원기	남동구 논현동 산71	
			교육실	조립식판넬스레트	16.92			
			화장실	브릭스레트	6.30			
2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53.20	성원기	남동구 논현동 산71	
			가추	스레트	13.68			
			가추	스레트	2.70			
			화장실	브릭스레트	3.60			
3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50.74	유정옥	남동구 논현동 산71	
			가게	브릭스레트	24.30			
4	논현동	산71	창고	함석스레트	17.50	손금순	남동구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51.80			
			가옥	브릭스레트	40.56			
			가추	함석및스레트	33.79			
			부엌및보일러실	판넬스레트	8.10			
			창고	브릭스라브	7.80			
			세면장	브릭스레트	11.10			
			화장실	목조스레트	1.56			
			건사	목조	1.00식			
5	논현동	535	가옥	흙벽스레트	31.00	김덕임	남동구 논현동 535	
			가추	목조스레트	37.10			
			가옥	브릭스레트	33.99			
			가추1	목조스레트	7.50			
			가추2	목조스레트	6.00			
			화장실	브릭스레트	8.00			
6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54.32	이영실	남동구 논현동 산71	
7	논현동	산71	보일러실및창고	브릭스레트	7.56	오월남	남동구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31.50			
			세면장	브릭스레트	6.30			
			건사	목조	7.5			
			화장실	스레트	3.60			
			창고	스레트	9.72			
8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132.98	김영화	남동구 논현동 산71	
			가옥	목조함석	41.71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9	논현동	산71	가옥	목조함석	42.72	김신자	남동구 논현동 산71	
10	논현동	산69-30	가옥	목조판넬	52.00	박용철	남동구 논현동 산69-30	
			창고1	목조	36.40			
			창고2	목조	63.75			
			가옥	목조	17.28			
			창고3	목조	35.00			
			화장실	목조	4.00식			
			세면장	목조	16.00			
			건사	목조	4.00식			
11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80.83	이맹하	남동구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라브	7.70			
			가추1	목조스레트	9.62			
			가추2	목조스레트	8.14			
			가추	브릭스레트	8.80			
12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67.90	윤홍길	남동구 논현동 산71	
			창고	브릭스레트	11.76			
13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151.55	박종선	남동구 논현동 산71	
			가추	목조스레트	4.86			
			화장실	브릭스레트	2.25			
			건사	목재	2.00식			
14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88.81	최명옥	남동구 논현동 산71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73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간석동 일대 인천중앙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붙임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한리자의 현황 : 붙임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3. 4.11 ~ 5. 10(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2003. 5.10 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453- 2285)

2003. 4.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소유사실확인원 발급에 따른 물건조서 공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구조, 수종	평수(m ²), 수량	비고
안근순		간석동	423-1	방	적벽돌스레트	42.10	
				거실	적벽돌스레트	22.40	
				현관	적벽돌스레트	4.30	
				욕실	적벽돌스레트	3.20	
				창고	목조스레트	6.80	
				창고	블럭스레트	6.20	
				창고	목조합판	16.56	
				화장실	목조합판	1.44	
				창고	블럭선라이트	12.50	
				가추	블럭천막	6.60	
				바닥	콘크리트	34.00	
				지하수	관정	1식	
				대문	철재	1식	
				보일러실	목조(1.19m ²)	1식	
				채양	선라이트	12.0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17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1-13호선)“간석역 남광장부근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6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1-13호선)
 - (2) 명 칭 : 간석역 남광장 부근 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 1-13호선 : 폭원(B)=10m, 연장L=422.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3. 4. ~ 200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9.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10.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등명	지번	권면적	잔여면적	전체면적	
1	간석동	394-19	5.7	7.1	12.8	오경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4-19
			5.4	-	5.4	담장
2	간석동	394-1	23.3	-	23.3	담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정동 445-2
3	간석동	394-1	22.5	-	22.5	담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정동 445-3
4	간석동	394-1	24.0	-	24.0	담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정동 445-4
5	간석동	393-19	325.8	-	325.8	대한국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정동 475-8
6	간석동	392	18.0	-	18.0	가건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0
			15.7	-	15.7	가건물
7	간석동	392	21.4	-	21.4	서정길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2-1 신세계 APT 4/1104호
			1EA	-	1EA	출입문
			1주	-	1주	문주
			1EA	-	1EA	정화조
			1EA	-	1EA	편포및차단기
			45.3	-	45.3	바닥

평가의

평가의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평면면적	잔여면적	전체면적			성명	주소	
8	간석동	392	10.3	-	10.3	블럭조	담장	김양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3	
9	간석동	392	24.5	-	24.5	웬스	담장	김순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4	
			60.8	-	60.8	콘크리트포장	바닥			
10	간석동	392	16.5	-	16.5	웬스	담장	이복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8	
			16.8	-	16.8	블럭조	담장			
			8.8	-	8.8	콘크리트포장	바닥			
			1EA	-	1EA	철재	대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11	간석동	392	22.5	-	22.5	블럭조	담장	김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9	
			1EA	-	1EA	철재	출입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8.8	-	8.8	콘크리트포장	바닥			
			3주	-	3주	파실수	수목			
			1EA	-	1EA	웹포및차단기	웹포실			평가외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편입면적	잔여면적	전체면적			성명	주소	
12	간석동	392	16.5	-	16.5	블럭조	담장	이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13	평가외
			1EA	-	1EA	철재	출입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22.0	-	22.0	콘크리트포장	바닥			
			3주	-	3주		수목			
			1EA	-	1EA		정화조			
13	간석동	392	14.9	-	14.9	블럭조	담장	조광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14	평가외
			1EA	-	1EA	철재	출입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24.0	-	24.0	콘크리트포장	바닥			
			7주	-	7주	수목	화단			
			10.0	-	10.0	목조	개집			
			1EA	-	1EA	펌프및차단기	펌프실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권입면적	잔여면적	전체면적			성명	주소	
14	간석동	392	15.3	-	15.3	적벽돌조	담장	홍성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18	
			24.1	-	24.1	블럭조	담장			
			1EA	-	1EA	철재	출입문			
			1주	-	1주	벽돌조	문주			
			19.3	-	19.3	수목	화단			
			11.6	-	11.6	콘크리트포장	바닥			
			1EA	-	1EA	펌프및차단기	펌프실			
15	간석동	392	36.0	-	36.0		담장	조정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2-19	평가외
			6주	-	6주		수목			
			1EA	-	1EA		정화조			
16	간석동	387	417.6	-	417.6	블럭조	담장	유한극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75-8	
					이	하	여	백		

대한주택공사논현사업단공고 2003-1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1997-68('97.3.6)호로 지구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56('00.4.10)호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편입 토지중 소유자 불명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 토지수용법 제25조, 동법시행령제7조 및 제15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보상 장소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의 종류 : 인천논현(2)택지개발지구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사업예정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동 일원
- 공고기간 : '03. 4.10 ~ '03. 4.24
- 보상협의기간 : '03.3.10 ~ '03.4.10(31일)
 - * 공고기간내 협의보상 가능
- 보상금산정 : 2개공인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 보상장소 :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 전화 : 032-819-0186,7
-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시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보상장소로 문의
- 공시송달 물건목록 : 붙임

2003.

대한주택공사논현사업단장

인천 노현2지구 공시송달 지장물 목록

소재지	지번	지장물번호	물건종류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가옥	창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현동	411-38	524	가옥		81.95	차세섭	인천 남동구 노현동411-38(2/4)	김병찬	인천 남동구 만수1동 삼환APT 1단지 102/205
				창고	19.03				

